

'20.10.21일
제3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

별첨 2

오픈뱅킹 고도화 방안

2020. 10. 21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추진배경	1
[참고] 운영현황 및 성과	2
II.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	3
1. 오픈뱅킹 확장성 제고	3
2. 상호호혜적 오픈뱅킹 생태계 조성	6
3. 오픈뱅킹 안정성 강화	8
III. 추진일정	10

I. 추진배경

□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'19.12월 출범한 오픈뱅킹은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

○ 출범 이후 등록·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*하는 한편, 금융산업의 변화**를 촉발하는 계기로도 작용

* [등록이용현황('20.9월 누적)] (가입자) 5,185만명, (계좌) 8,432만좌, (API이용) 17.6억건

** 은행권의 고객 유치 및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 개발 경쟁, 간편 송금업자의 흑자 전환 등

※ 오픈뱅킹 개요

○ (개념)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·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

○ (수수료) 핀테크기업 고객이 오픈뱅킹으로 자금이체 등 이용시 은행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기존 대비 최대 1/10 수준(500원 → 50원)으로 인하

□ 다만, 더욱 많은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능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

① 타 금융업권(상호금융, 금융투자회사, 카드사 등) 추가 참여(현재는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여)

* (이용자) 한 앱에서 조회·이체할 수 있는 계좌가 늘어나 더욱 편리하게 이용가능, (금융회사) 타업권 자금 유치, 대고객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적극 참여 희망

②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상호 win-win 관점에서 시스템 운영비 적절한 분담, 데이터 상호개방, 수수료 체계 합리적 개편 등

③ 오픈뱅킹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, 법적 기반도 마련

⇒ 국민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오픈뱅킹이 이체·송금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하도록 고도화 추진

참고

오픈뱅킹 운영현황 및 성과

- **(등록현황)** 출범 이후 가입자, 등록계좌 수는 지속 증가하여 경제 활동인구의 82% 이상, 요구불계좌의 89% 이상 등록

※ 70개의 이용기관(은행 18개, 대형사업자 27개, 중소형사업자 25개) 참여

- 월간 API 이용건수는 2억 5천만건(일평균 825만건)으로 누적 17억 6천만건에 도달('20.9월 기준)

< 오픈뱅킹 등록 추이 >

구분 (만명, 만좌)	시범실시	전면시행	'20.1월	'20.3월	'20.5월	'20.7월	'20.9월
가입자수 (은행/핀테크)	317 (317/-)	1,058 (374/684)	1,683 (475/1,208)	2,805 (655/2,150)	3,780 (791/2,989)	4,511 (987/3,524)	5,185 (1,161/4,024)
계좌등록 (은행/핀테크)	778 (778/-)	1,992 (966/1,026)	2,975 (1,249/1,726)	4,706 (1,789/2,917)	6,080 (2,199/3,881)	7,303 (2,724/4,579)	8,432 (3,222/5,210)

- **(성과)** 은행권과 핀테크기업 간 서비스 경쟁으로 앱 개발 경쟁 등 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

- ① 은행권은 신규고객 유치 및 새로운 서비스·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모바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기반 마련

- 오픈뱅킹과 연계한 특화상품*과 관련 서비스 개발·제공

* 예) 원스톱 환전, 여러계좌를 연동한 간편결제 충전 및 더치페이, 결제대금 선결제 등

- ② 핀테크기업은 이체·송금 분야에서 획기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 주력

* 핀테크기업은 오픈뱅킹으로 약 731.9억원의 펌뱅킹 비용(평균 300원/건 → 50원/건)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(금융연구원)

- 특히, 비제휴은행까지 포함한 모든 은행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해져 기존 제공이 어려웠던 신규상품도 활발히 출시*

* 예) 여러 은행 통장으로 월급 분할 송금, 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, 미제휴 은행까지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서비스 제공 등

- ③ 금융소비자는 수수료 무료 확대, 사용하기 편리한 앱개발 경쟁 등에 따라 이용경험 및 편익 제고

Ⅱ.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

추진방안

◇ 디지털금융 혁신 및 경쟁 촉진, 이용자편익 증진을 위해
 ①확장성, ②상호주의, ③안정성 관점에서 다음 9개 과제 추진

오픈뱅킹 확장성 제고

- 1 참가기관 확대
- 2 이용가능계좌 추가
- 3 디지털 신산업 연계강화

상호호혜적 생태계 조성

- 1 업권 간 데이터 상호개방
- 2 균형잡힌 수수료체계 마련
- 3 오픈뱅킹 거버넌스 구축

오픈뱅킹 안정성 강화

- 1 보안 모니터링 강화
- 2 사전·사후보안관리 도입
- 3 오픈뱅킹 법제화 추진

1 오픈뱅킹 확장성 제고

◇ 타 금융업권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산하고,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융치 경쟁 등을 촉발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

①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: 타 금융업권

- 오픈뱅킹 참가기관을 현행 은행·핀테크에서 타 금융업권*으로 추가 확대 ⇒ 금융혁신과 경쟁이 확산

* 중앙회(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저축은행, 산림조합), 우정사업본부 및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 참가

○ 전산개발 등을 거쳐 12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순차 실시 예정

※ 카드사의 경우 수신계좌 보유기관이 아닌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참가업권과의 별도 협의(제공정보 확정 등) 및 전산개발을 거쳐 '21년 상반기부터 실시

< 추가 참여예정기관 >

< 상호금융(7) >

- ▶ 중앙회(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신협), 우정사업본부(이상 '20.12월 이용기관 참여), 저축은행중앙회('21.3월 이용기관 참여)

< 금융투자(17) >

- ▶ 교보증권, 미래에셋대우, 삼성증권, 신한금융투자, 이베스트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KB증권, NH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대신증권(이상 '20.12월 이용기관 참여)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, SK증권(이상 '21.2월 이용기관 참여), 유진투자증권('21.3월 이용기관 참여), DB금융투자('21.7월 이후 이용기관 참여)

※ 저축은행중앙회('21.1월 예정)를 제외한 23개 기관 모두 '20.12월부터 제공기관으로 참여예정

② **오픈뱅킹 이용가능계좌 추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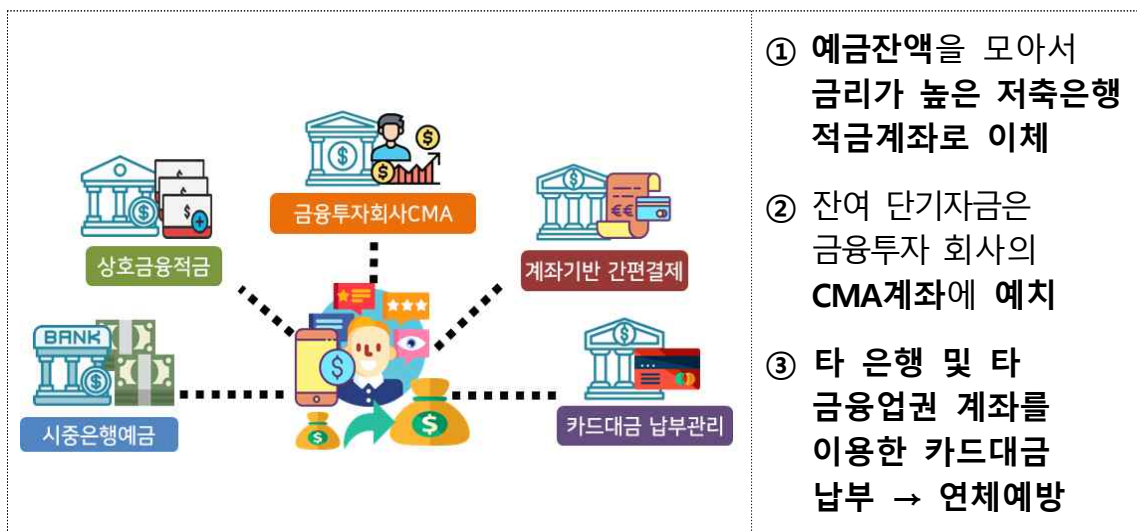
□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

- 개인 자산관리 등에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금가능 계좌에 예·적금 계좌 포함

※ (현행)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하여 입금가능 → (개선)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

- 향후 증권사, 카드사 등 참여기관 확대 시점에 맞춰 추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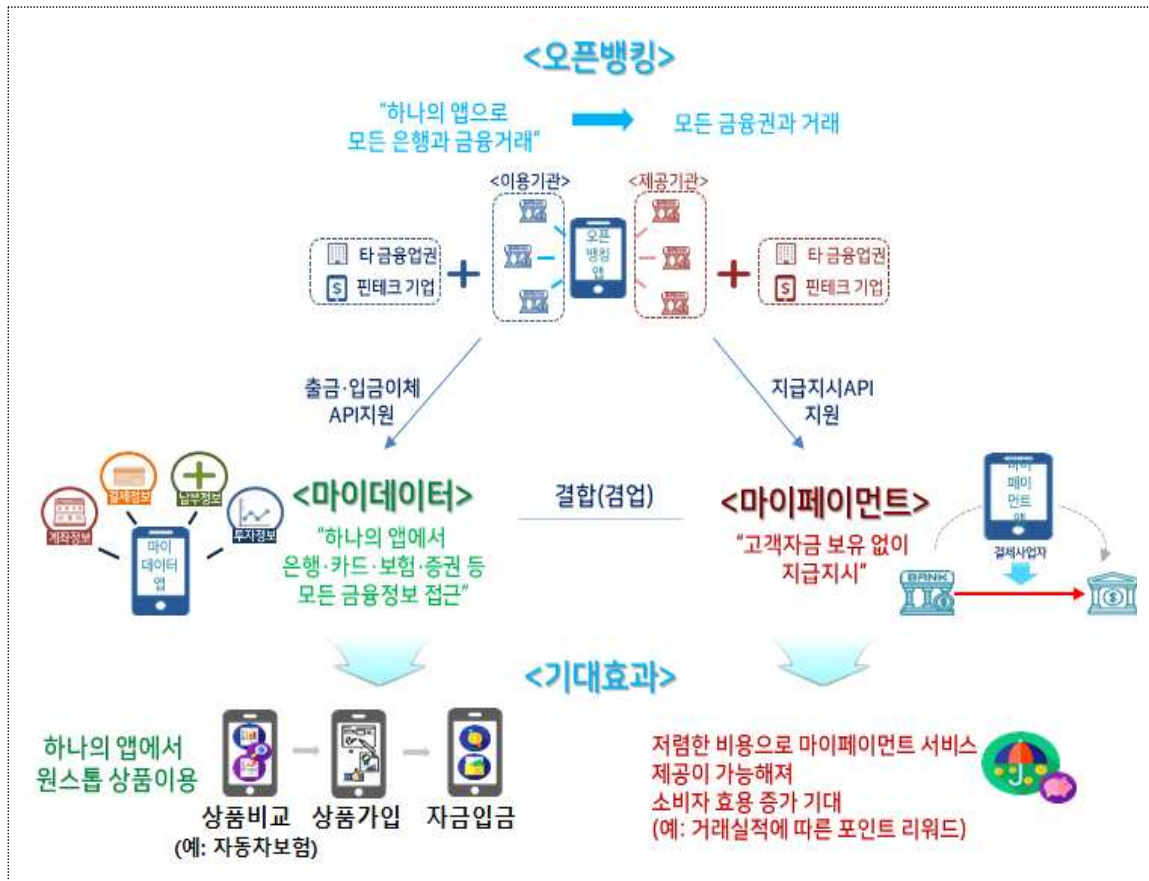
< 오픈뱅킹 참여기관 및 기능 확대에 따른 對 고객 서비스(예시) >



3 디지털 신산업 연계 강화

-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인프라를 제공
 - (마이데이터) 오픈뱅킹 연계시 마이데이터 앱에서 상품 추천, 계좌개설 후 이체API를 통한 자금이체까지 편리하게 이용가능
 - * 예시) 마이데이터(유사)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사앱(상품가입) 및 은행앱(자금이체) 별도 접속 필요
 -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이체 가능
 - (마이페이먼트) 오픈뱅킹에 지급지시이체 API를 신설하여 별도 시스템 없이 저비용으로 지급지시전달 서비스 제공 가능
 - *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에 참여할 경우,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 가능 → 마이페이먼트 산업 활성화

< 오픈뱅킹 - 마이데이터 - 마이페이먼트 연계효과 >



◇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의 데이터 제공수준, 이용수수료 조정 및 운영비용 분담방안 등 마련

① 업권 간 데이터 상호 개방

□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*

* 그간 핀테크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없이 은행권의 계좌 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용

○ 시장수요 및 제공방식, 시스템 구축방안, 제공 데이터별 적정 가격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개방 대상 데이터 선정

- (핀테크) 빅테크·핀테크 보유정보 중 은행의 조회기능(잔액, 거래내역)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* 제공 추진

* 예)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계정의 잔액 및 거래내역, 간편결제 세부내역

- (카드사) 계좌 보유기관은 아니지만, 은행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정보* 개방

* 예) 카드 보유내역, 결제예정금액, 결제계좌

- (은행권) 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*

* 이 경우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

□ 핀테크기업들도 제공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은행권 등과 분담 추진

○ 오픈뱅킹 구축·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은행권 및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용분담 수준 결정

※ 중소형 핀테크기업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담 수준 완화

② 균형잡힌 수수료 체계 마련

-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*,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·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회 수수료**를 합리적으로 조정 유도

* '20.10월 현재, 오픈뱅킹 초기 기본계획 수립 당시('19.4월) 예상보다 조회건수가 약 7.8배 수준으로 증가(월 2,314만건→1.81억건)

** '19년 오픈뱅킹 시행시 이체 수수료는 1/10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나, 조회 수수료는 변동이 없었던 점도 감안

- 세부 조정 수준은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내 1차 조정

- 추후 마이데이터 시행시 마이데이터 과금체계와 연계하여 추가 검토

※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('19.4.15) 및 세부추진방안 설명회('19.6.20)

-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추후 운영상황(거래현황, 시스템 증설, 법령 개정 등)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(수수료 수준, 방식 등)

③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

- 오픈뱅킹 이해관계자들(참여기관, 운영기관, 유관기관 등)이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·조율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

- (구성) 오픈뱅킹 참여업권, 운영기관, 보안점검기관

※ 카드사, 핀테크업권도 내년 상반기 참가 일정을 감안하여 협의기구에 참여

- (내용) 구성원 간 의견교환 및 포괄적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, API표준, 가이드라인 등 주요 사안 전반을 논의

- 수수료 체계, 타 업권의 특별참가, 데이터개방 등 주요 쟁점별로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자문기구 역할 수행

3

오픈뱅킹 안정성 강화

- ◇ 오픈뱅킹의 보안·운영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, 지속 가능한 핵심금융 인프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

① 보안 모니터링 강화

1.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 고도화

- (현행) 오픈뱅킹망 내 사전 정의된 규칙*을 위반한 거래만 이상 거래로 탐지가 가능하여 정의되지 않은 이상거래는 탐지 불가

* 예) 동일 사용자가 동일 계좌번호에서 1시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이체 요청

- (개선) 평소 이용패턴과 다른 거래에 대한 탐지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누적점수에 기반한 부정거래 탐지방식* 도입

* 결제금액 및 시간대 차이 등 과거거래와 다른 패턴에 점수를 부여하여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 초과시 이상거래로 탐지하여 이용기관에 통보

2. 상시모니터링 체계 지원

- 중소 핀테크 사업자*를 대상으로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

* 자본금 20억원 미만인 일부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확대 예정

-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* 지원

* 공격패턴 및 악성코드 탐지, 방화벽 등의 기능을 갖춘 공공클라우드 기반 침입방지 시스템(IPS, Intrusion Prevention System)를 통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격위험 탐지·대응

< 상시모니터링 지원 체계 >



② 핀테크기업에 대한 사전·사후 보안관리 도입

- (사전점검)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기업은 자체점검에 더하여 보안 점검기관을 통한 외부 보안점검을 의무화(既면제기관도 연내 점검 필요)
- (사후점검) ①민감거래 API* 이용여부, ②거래규모, ③사고이력에 따라 매년 핀테크기업을 분류하여 차등화된 사후보안관리 도입

* 입금이체, 출금이체, 거래내역조회, 잔액조회API

- ① (가군) 민감거래 API 이용이 많은 회사이거나 전년도 보안사고가 있었던 회사 ⇨ 매년 수행
- ② (나군) 민감거래 API를 이용 중이나 전년도 보안사고가 없던 소형회사로 서비스·인프라에 중대변경이 없는 경우 ⇨ 격년 실시
- ③ (다군) 민감거래 API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로 보안사고나 중대변경이 없음 ⇨ 기업 보안점검 3년, 서비스 취약점 점검 격년 실시

※ 나군, 다군도 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대변경 발생시 보안점검 수행 필요

③ 오픈뱅킹 법제화 추진 (전자금융거래법 개정)

-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오픈뱅킹 참가요건, 준수 의무 등 법적 기반 마련 추진

※ '19년 IMF FSAP: 오픈뱅킹의 안정성을 위해 '법적근거 마련(Legal Foundation)' 권고

- ① (참가요건) 은행, 핀테크기업 외 타 금융업권(상호금융·저축은행 등)으로 참가기관의 확대가 용이하도록 범위 및 자격을 규정
- ② (준수 의무) 제공기관, 이용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
 - (제공기관) 원활한 오픈뱅킹 이용 및 공정경쟁을 위해 타 참가기관의 수수료, 처리순서 등에 대한 차별없는 협조의무 규정
 - (이용기관) 안전한 금융인프라 이용을 위한 보안·인증·표준화·정보보호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준수

Ⅲ. 추진일정

- ① 세부실행방안은 참여업권간 협의를 거쳐 마련
 - 타 금융업권 참가기관 확대는 금융회사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금년 12월부터 순차 시행
 - 카드사 참여, 업권 간 데이터 개방, 조회 수수료 조정 등은 참여업권 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연내 마련
- ② 입금가능계좌 확대, API 추가,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은 전산개발 완료 즉시 시행

[세부 핵심과제별 추진일정]

분 야	핵심과제	시기
① 확장성	① 타 금융업권(수신계좌보유기관) 참가기관 확대	'20.12월~
	② 카드사 참여	'21.上
	③ 오픈뱅킹 이용가능계좌 확대 추진	'20.下
	④ 지급지시이체 API 추가	'21년 중
② 상호주의	① 핀테크기업 보유정보 개방	'21.上
	② 어카운트인포 API 개방	'21.上
	③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조정	'20.下
	④ 오픈뱅킹 거버넌스 구축	'21.上
③ 안정성	①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 고도화	'21.下
	② 상시모니터링 체계 지원	'21.上
	③ 이용기관 사전·사후관리 보안점검 강화	계속
	④ 오픈뱅킹 법제화 추진	'20.下